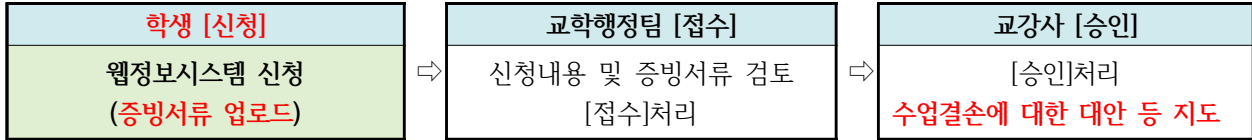


2021-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

□ 정의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출석의 인정

□ 절차(세부방법 붙임 참조)



※ 학생은 ‘증빙서류’ 및 ‘출석인정요청서’ 제출 절차 생략

□ 출석인정 사유

1. 일반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망	당일부터 7일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4촌 이내의 친족 사망	당일부터 3일	
본인의 출산	20일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출산	5일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빙서류
입원 또는 의사소견 상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사고 치료	2주 이내	1. 진료비 영수증 2.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징병검사	검사일	징병검사 통지서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	해당기간	해당기관 공문
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	해당기간	승인 관련 서류
최종학기 취·창업(인턴포함)	해당기간	<취업> 1. 재직증명서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 <창업> 1. 사업자등록증 2.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 시험에 참여	해당일	해당 기관장 확인서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	해당일	해당 부서장 확인서

※ 단순질병 및 치료(몸살감기, 단순 복통/두통, 장염/위염, 안과/치과치료, 정기검진, 비염, 두드러기, 가벼운 타박상 등)는 사유 불가함

2. 학생선수

대상	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	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수업시수 대비 최대 1/2까지)	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
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외 프로 입단자	인정하지 않음, 다만 국가대표(상비군 포함)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	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

3.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사유

인정사유	인정기간	증빙서류
코로나19 확진환자	당일부터 2주 이내	입원치료 및 격리해제 확인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해당기간	자가격리(격리기간 기재) 통지서
코로나19 검사자	해당일	검사방문증 및 검사결과 통지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당일부터 2일 이내	백신접종 사실증빙서류(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등)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자	당일부터 2주 이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 코로나19 검사 방문증은 문진표 작성 후 검사받기 전 직원에게 요청하여야 함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경우 2주 이상 결석 시 질병휴학 권장

◆ 발열로 인한 강의실 출입 제한자

▶ 교내건물 출입 시 발열체크 후 발열자(37.5℃ 이상)는 강의실 출입이 제한되며,

당일 즉시 코로나19 검사 권고

(코로나19 검사자에 한해 ‘코로나19 검사자’ 유고결석 신청 가능)

□ 유의사항

1. 출석인정은 공휴일(토요일 포함)을 제외하고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최종학기 취·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하므로 기간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2.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교학행정팀) 시 해당수업 교·강사에게 유고결석 승인요청 관련 내용 문자 자동발송
3. 증빙서류 위·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함
4.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원격수업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
5.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강사가 제시하는 과제, 논문,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함
6.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2021.08.30(월)]~성적공시(입력)기간 종료일[2021.12.29(수)]까지 가능함**
7.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추가 안내는 [별첨] 참조

교 무 처 장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서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 이 확인서는 귀하가 받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과 다음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일정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 접종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내역 관리(코로나19 백신 간 교차접종이 권고되지 않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예방접종증명서'로 대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을 위해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문 후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접종명 및 차수	제조사명	접종일	접종기관명
코로나19 1차		년 월 일	
2차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일(가능일):		년	월 일
 질병관리청			

[별첨2]

출처 : 교육부

○ 예방접종증명서(서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11.>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성별 Sex	
주소 Address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직인 Seal Governor of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Si/Gun/Gu, The head of () medical institution			

210mm×297mm[표성지 80g/㎡(재활용품)]

○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 및 Q&A(학생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 전 | 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상태가 좋을 때, 접종하기•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 받기• 다음과 같은 경우 예방접종 연기하기<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접종 연기-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는 접종 연기-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접종 연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 관찰 후 3시간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하기• 예방접종 후 일주일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발열, 피로감, 두통, 근육통, 오한,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
- 호흡곤란, 얼굴의 부기, 눈 또는 입술·입안의 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가슴 통증·압박감·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심낭염 발생할 수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 할 경우

- 접종부위 부기,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
-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
 - *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 진통제 준비,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가슴 통증·압박감·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 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접종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이나 발열 등이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 내원하기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내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 07. 16.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Q&A(학생용)

Q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이상반응에는 무엇이 있나요?

- A. 학생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은 성인과 유사하며, 2차 예방접종 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신체가 백신에 반응할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일 이내에 소실됩니다.

예방접종 후 일반적인 이상반응 및 관리방법

이상반응	관리 방법
주사 부위의 통증, 부기, 발적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관절통, 피곤함	·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 · 발열이나 근육통이 있는 경우 필요에 따라 해열제 복용
목이나 팔의 림프절 부종	일반적으로 일주일 정도면 회복

단, 드물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정보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 > Q&A모음 >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Q 예방접종 후 특별히 주의해야하는 이상반응이 있나요?

- A. 가슴 통증·압박감·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 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또는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는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Q 예방접종 후 학생들이 격렬한 활동을 해도 될까요?

- A.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심근염 및 심낭염의 위험을 고려할 때, 특히 청소년과 젊은 남성은 1차 및 2차 예방 접종 후 일주일 정도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피할 것을 권장합니다.

예) 수영, 사이클링, 달리기, 무거운 역기 들기, 운동경기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안내문 및 Q&A(학생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 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세요.
- 접종 후 미열이 있는 경우,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으로 불편할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예방접종 전에 미리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준비하고, 예방 접종 후 몸살 증상이 있으면 해열·진통제를 복용하세요.



이럴 땐, 의사 진료를 받으세요.

- 접종 후 접종부위 부기, 통증, 발적이 48시간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
- 접종 후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되는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접종 후 4주 이내에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접종 후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가슴 통증·압박감·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이럴 땐, 119에 신고 또는 응급실을 방문하세요.

- 접종 후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
- 접종 후 입술, 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 접종 후 갑자기 의식이 없거나 쓰러진 경우

○ 코로나19 백신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심근염/심낭염이란?

- 심근염(myocarditis)은 심장의 근육에 발생한 염증입니다.
- 심낭염(pericarditis)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생긴 염증입니다.

미국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으며, 환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로 16세 이상의 남자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의 남자에서 발생
- mRNA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했으며, 1차보다 2차 접종 후 더 많이 발생
-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수일 이내에 발생
-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와 휴식 후 빠르게 호전되었고, 호전된 후 정상적인 일상 활동이 가능했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래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심근염/심낭염 주요 증상

-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 시 통증
-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  실신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Q&A

Q1 심근염과 심낭염은 어떤 질병인가요?

심근염은 심장의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입니다.

Q2 어떤 백신 접종 후에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하나요?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Q3 심근염이나 심낭염의 의심증상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심근염/심낭염의 주요 증상은 가슴통증·압박감·불편감,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런 의심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4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은 얼마나 발생했나요?

미국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30세 이하에서 심근염, 심낭염 사례가 1,047건 보고되었고
이 중 심근염/심낭염은 633건이 확진사례이며 주로 화이자백신과 모더나백신 접종후
발생했고 남자 청소년 및 청년층에서 발생했습니다 (7.13일 발표).
유럽 의약품청에서는 심근염/심낭염을 mRNA 백신의 부작용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하면서,
화이자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근염 145건, 심낭염 138건과 모더나백신 접종 후 보고된
심근염 19건, 심낭염 19건을 검토한 결과, 그중 5명은 사망했으며,
- 주로 젊은 성인 남성에서 백신 접종 후 14일 이내에 발생했고,
2차접종 후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7.9일 발표).

○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포스터



•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이란? •

-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으로,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과 혈전증이 동시에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 매우 드물지만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6.16일 기준) **2건**이 확인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증상으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코로나19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4일에서 4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 1 심한 또는 2일 이상의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또는 구토를 동반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 2 호흡곤란, 흉통, 지속적인 복부 통증, 팔·다리 부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 3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긴 경우 등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은 **의사의 진료**를 통해 조기 발견하고 적절히 치료하면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혈소판감소성 혈전증의 감시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관련 전문 학회*와 신속한 사례공유로
진단·치료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대한신경과학회, 한국혈전지혈학회



2021. 07. 05.

혈소판감소성 혈전증과 일반 혈전증의 비교

	일반 혈전증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임상 특징	동맥 • 뇌동맥 / 관상동맥에 호발 정맥 • 하지 심부정맥/폐동맥에 발생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 접종 후 4일에서 28일 사이에 발병 • 드물게 발생하는 부위인 뇌정맥동 및 내장정맥의 혈전이 특이적 이나 다른 부위(하지정맥 등)도 침범가능
검사 지표	• 관상동맥 (CK, Tnl 상승) • 정맥 (D-dimer 상승)	• 혈소판 감소 동반 • D-dimer 상승 • PF4 ELISA 검사 양성
발생 기전	1) 혈액흐름의 정체 • 거동장애/심박세동/혈관기형 2) 혈관손상 • 죽상동맥경화증/혈관염 3) 응고기능 이상 • 탈수/암/자가면역질환/약물 (여성호르몬제 등)	백신과 연관된 자가면역질환 추정 • 헤파린 유도 혈소판감소증과 유사기전 혹은 아스트라제네카/얀센 백신에 포함된 유전물질이 특이 단백질을 생성하여 혈전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
치료	동맥 • 혈전 용해제 혹은 혈전제거술, 스텐트 시술 및 항혈소판제 정맥 • 항응고제	• 혈액전문의에게 의뢰 • 헤파린 및 혈소판수혈 금지 • 항응고치료는 경구약 (라바록사반, 에독사반, 아픽사반, 다비가트란) 혹은 주사제(아가트로반) 사용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혈액응고장애 자문단(2021. 6. 11.)

○ 아나필락시스 관련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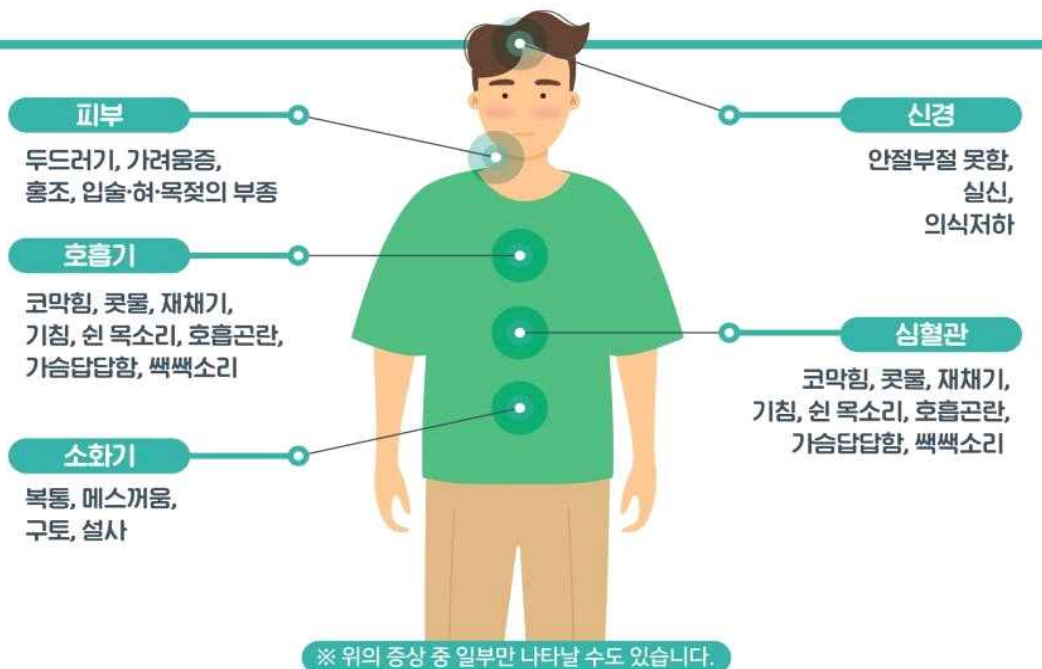
아나필락시스 증상 알기

아나필락시스는 매우 드물지만, 갑자기 발생하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예방접종 후에는 **최소 15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는지 관찰해야 하며, 이전에 다른 원인 (약, 음식, 주사 행위 등)으로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30분간 관찰**하도록 합니다.

☑ 아나필락시스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피부가 전신적으로 붉어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김
- 숨이 차고 쌉쌉거림
- 혀가 부음
- 목이 붓고 조이는 것 같음
- 말하기 힘들고 목소리가 잠김
- 쌉쌉거리거나 기침을 계속 함
- 계속 어지럽거나 의식이 없음
- 창백하거나 늘어짐



아나필락시스 증상 알기

☑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떤 처치가 이루어지나요?**



01
편평한 곳에 눕히고,
의식과 맥박, 호흡을 확인합니다.



02
빨리 119에 연락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합니다.



03
에피네프린이 있으면,
주사하고 시간을 기록합니다.



04
다리를 올려서
혈액순환을 유지합니다.



05
산소가 있으면
마스크로 공급합니다.



06
2차 반응이 올 수 있으므로
응급실로 신속하게 이송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빠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위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 **집에 돌아간 후에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대부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30분 이내 나타나지만, 귀가 후에도 알레르기 반응 (눈물, 콧물, 입술주위나 눈의 가려움증, 재채기, 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가벼운 알레르기 증상이 계속될 경우 항히스타민제 등 처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2021.04.0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보상이 되나요?

신청 가능한 보상의 종류

-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 **장애인 일시보상금**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해보상 신청기한: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01

피해보상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신청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시)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해당) ·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 신분증*	·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 사망진단서 ·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검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인과성 심의, 지급 결정

지방자치단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심의 등을 바탕으로 지급결정
(보상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 지급결정)

02

03

결과통지 및 보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보상수급권자에게 보상금 지급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피해보상 상세자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ncv.kdca.go.kr>)을 참고하세요.